## 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 2928

2025년 9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최유희 의원 (찬성자 27명)

나. 제 안 일 : 2025년 8월 11일

다. 회 부 일 : 2025년 8월 14일

라. 상 정 일 :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

2025년 9월 8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최유희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는 인권종합계획 수립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의 대응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나, 조례에 따라 계획 수립 주기가 3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상시 운영 필요성이 낮음.
- 실제로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2023년 1회에 그쳐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, 위원회 해촉 관련 조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대체 가능하므로 삭제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(안 제45조제1항)
- 위원 해촉 조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적용 가능하므로 삭제(현행 제46조제7항)
- 악건 발생 시 시장이 위원회를 소집(악 제47조제2항)
-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함(안 제49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어린이・청소년 인권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(2025. 8. 20. ~ 8. 24.) 결과 : 의견 없음.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(이하 '본 개정안')은 위원회의 상시 운영 필요성이 낮고 실제 회의 실적이 저조한 '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'(이하 '본 위 원회')를 비상설로 전화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#### ※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

- · 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 비상설 전환
  - · 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(안 제45조제1항).
  - 위원 해촉 조항 삭제(현행 제46조제7항).
  - 안건 발생 시 시장이 위원회를 소집(안 제47조제2항)
  -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함(안 제49조).

#### ※ 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

본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·구성('13.2.20.)된 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는 어린이 및 청소년 인권에 관한 인권종합계획 수립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관한 대응 방안을 심의하고, 어린이·청소년 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
## 1) 위원회 비상설 단서 신설 및 위원의 임기 규정 개정 (안 제45조제1항, 제46조제5항~제6항)

○ 안 제45조제1항은 단서를 신설(안건 발생시 구성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)하여 본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, 안 제46조제5항은 기존 위원의 임기 규정(현행 제46조제5항 및 제6항)을 당초 2년에서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・의결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개정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(현행 제46조제6항)과 위원의 해촉 규정(현행 제46조제7항)을 삭제하려는 것임.

#### 혅 했

제45조(어린이 · 청소년 인권위원 회) ① 시의 어린이 · 청소년 인 권에 관한 중요 정책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관한 대응방안 을 심의하고, 어린이·청소년 인 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 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 여 어린이 · 청소년 인권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단서 신설>

#### ② · ③ (생략)

(생 략)

-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
- 1.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에 해 당하는 사람
- 2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 출한 사람

개	시	$\circ$ }
7 [	정	긴

제45조	(어린이	• 청소	2년	인권위	원회)
1					
					둘
수 %	있다. 다	만, 위	원회는	= 안건	_ 이 발
 생하	— — 면 구성	하고,	해당	안건의	 심의
· 의	결이 종	료되딩	<u>년</u> 해 4	산한다.	
<u></u>	<u> </u>	행과 7	같음)		

- 제4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제4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현 행과 같음)
  -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· 의 결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- 3.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
  4.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 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 사람
- 본 위원회는 어린이·청소년 인권에 관한 중요 정책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관한 대응방안을 심의하고, 어린이·청소년 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·운영하고 있음.
- 최근 5년간 본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연 평균 2회 미만으로,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의 정비 권고\*(위원회 설치시 비상설 운영 원칙, 비효율 위원회의 정비 등)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(안 제45조제1항)를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 (임기 및 해촉 규정 삭제)하려는 것으로 보임.

#### 〈 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 운영 실적 〉

연도	일자	참석	회의안건
20	10. 20.	12명	ㅇ3기 어린이·청소년 인권종합계획('20.~'22)수립 관련 서면심의
	5. 18.	16명	ㅇ4기 어린이·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서면자문
21	12. 8.	13명	○2021년 어린이·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위탁 운영 실적보고 ○2021년 어린이·청소년 인권실태조사(용역) 관련 영상회의 및 서면 자문
22	3. 25.	10명	ㅇ2021년 어린이·청소년 인권실태조사(용역) 결과 보고
22	12. 6.	10명	o 2021년 어린이·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문항 추가 및 보완사항
23	12. 13.	9명	○2023년 어린이·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심의·자문 ○2023년 어린이·청소년 인권실태조사(용역) 중간보고

출처 :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요약

※ 행정안전부, '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' (정비방향, 1페이지)



-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에 따르면 비상설 운영이 원칙이나, 위원회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바, 개최가 적을 정도로 위원 회의 기능(현행 제45조제2항)이 미미한지, 평생교육국의 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 개최 의지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- ※「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」

제45조(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)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어린이 · 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
- 2. 어린이·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
- 3. 어린이·청소년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
- 4. 시장의 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어린이·청소년 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
- 5. 어린이·청소년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. 정책. 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
- 6. 어린이·청소년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
- 7. 어린이 · 청소년 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 · 조사 보고서의 발간
- 8. 이 조례에서 정한 시행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
- 9. 그 밖에 시장, 시민인권보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

- ※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  - 제6조(위원회의 설치요건) ③ 제1항에 따라 <u>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(안건이</u> 발생하면 구성하고, 해당 안건이 심의·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)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〈신설 2023.7.24.〉
    - 1.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
    - 2.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
    - 3.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또한, 본 위원회 비상설화로 인해 중대 인권침해 사안(현행 제45조제2항제3호) 발생 시 위원회 구성 시간이 소요되어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, 어린이·청소년 인권종합계획에 따라 시장이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연도별 시행계획\*(현행 제65조제1항 및 제2항) 추진에 있어 일관성·연속성 결여 및 장기적 추진 사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  - 아울러, 인권처럼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에서 본 위원회의 비상설화는 인권 현황 평가 등 예방적 논의가 줄어들어 위원회의 기능이 사후 대응 중심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.
- ※「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」
  - 제65조(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) ① 시장은 어린이·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기 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.
    -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어린이 · 청소년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결론적으로 상설위원회는 안전성과 감시 가능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회의 실적 부진 시 유명무실화하거나 형식화될 단점이 있고, 비상설위원회는 유연성과 효율성에 장점이 있는 반면 지속성과 집행기관의 자의적 운영에 따른 책임성 부족이 단점인바, 본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할지 비상설로 운영할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#### 〈 상설위원회 및 비상설위원회 비교포 〉

구분	상설위원회	비상설위원회
설치 목적	특정 분야 정책을 상시적으로 심의· 자문	특정 현안·과제를 한시적으로 해결
운영 기간	지속적 · 정기적 (해산 전까지 존속)	임시적・한시적 (안건 처리 후 해산)
장점	-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- 정책 기억(memory) 축적 -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 견제 가능 - 시민 참여의 제도화, 민주성 강화	- 신속·탄력적 운영 가능 - 특정 현안 집중 검토에 유리 - 필요할 때만 운영 → 자원 절약 - 기구 난립 방지
단점	<ul><li>회의 실적 부진 시 유명무실화 가능</li><li>관행화・형식화 우려</li><li>인적・재정 자원 분산</li><li>집행부 부담 증가</li></ul>	<ul><li>지속성 부족, 전문성 축적 한계</li><li>정책 감시・견제 기능 약화</li><li>집행부 자의적 운영 가능성</li><li>후속관리・책임성 미흡</li></ul>

- 안 제46조제7항은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 해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
  - 향후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.
  - 다만, 어린이·청소년 인권을 다루는 본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해촉 기준 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- ※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
  - 제8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〈개정 2025.1.3〉
    - 1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
    - 2.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   - 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    - 4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
    - 5.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    - 6. 1년 단위(위촉일부터 기산(起算)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
    - 7.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# ※「지방공무원법」

- **제31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 〈개정 2024, 12, 31.〉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 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  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  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  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  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## 2) 위원회 회의운영 방법 변경(안 제47조제2항)

○ 안 제47조제2항은 본 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을 변경(위원장이 소집 → 시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)하고,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 요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생 략)	제4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	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 시
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	시장이 소집한다.
1. 정기회 : 연 4회 이상	<u>&lt;삭 제&gt;</u>
2. 임시회 : 시장 또는 위원장이	<u>&lt;삭 제&gt;</u>
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	
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	
<u>경우</u>	

- 본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경우 안건 발생 시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(안 제47조제2항) 회의소집 및 회의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.
- 다만, 안건 발생 시 '즉시' 소집이 아닌 시장의 재량에 맡겨지므로, 폭력 피해 조사나 정책 개선 권고 등 응급 인권 사안 대응이 늦어질 우려는 없는지, 평생교육국의 판단에 따라 소수자 인권 관련 안건 등 민감한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 소집이 제한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# 3) 운영세칙 (안 제49조)

○ 안 제49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본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하던 것을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	제49조(운영세칙)
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	
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<u>위원회</u>	<u>시장이</u>
<u>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</u> .	<u>운영세칙으로 정한다</u> .

- 본 위원회의 비상설화 맥락에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.
  - 다만, 본 위원회는 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, 제도적·자율적 운영 등을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, 시장이 운영 세칙을 정할 경우 정치적 편향이나 행정 편의가 반영되어 본 위원회의 중립적

심의, 인권보호적 관점의 심의 등이 제약받을 위험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.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- 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- 7. **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**(재석위원 5명, 전원찬성).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유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2928 발 의 년 월 일: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:최유희 의원(1명)

찬 성 자:강석주, 구미경, 김경훈, 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 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 석, 서상열, 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 채수지, 최민규, 황철규

의원(27명)

##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는 인권종합계획 수립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의 대응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으나, 조례에 따라 계획 수립 주기가 3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상시 운영 필 요성이 낮음.
- 실제로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2023년 1회에 그쳐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, 위원회 해촉 관련 조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대체 가능 하므로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어린이·청소년 인권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(안 제45조제1항)
- 나. 위원 해촉 조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적용 가능하므로 삭제(현행 제46조제7항)
- 다. 안건 발생 시 시장이 위원회를 소집(안 제47조제2항)
- 라. 시장이 운영세칙을 정함(안 제4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」

##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어린이 ·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5조제1항 중 "둔다"를 "둘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.

제4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·의결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.

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.

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9조 중 "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"를 "시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" 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 개 정 **아** 제45조(어린이 · 청소년 인권위원 제45조(어린이 · 청소년 인권위원 회) ① 시의 어린이 · 청소년 인 회) ① -----권에 관한 중요 정책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관한 대응방안 을 심의하고, 어린이·청소년 인 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 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 여 어린이 · 청소년 인권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단서 신설> 있다. 다만, 위원회는 안건이 발 생하면 구성하고, 해당 안건의 심 의 · 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. ②·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4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제4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 연임할 수 있다. 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 의 · 의결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. <삭 제>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<삭 제>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

할 수 있다.

- 1.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에 해 당하는 사람
- 2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 출한 사람
- 3.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
- 4.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 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한 사람

- 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1. 정기회 : 연 4회 이상
- 2. 임시회 :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 을 경우
- ③ ~ ⑧ (생 략)
- 제4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 기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4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생 략) 제4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시장이 소집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	
제49조(운영세칙)	
	싀
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	

## 서울특별시 어린이 ·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어린이 ·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어린이 · 청소년 인권위원회의 비상설화(안건발생 시 구성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)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참고로 위원회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변화를 검토1)하였으나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2023년 1회에 그쳐 이러한 추세<sup>2</sup>)가 지속될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도 그에따른 별다른 비용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

#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제승

**22** 02-2180-7953

e-mail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<sup>1) [</sup>연간 정례적 운영비 소요 → 안건량에 따른 운영비 소요] 비상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되는 위원회로, 안건량에 의해 회의개최 횟수와 운영비가 달라지므로 예상 안건량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

<sup>2) [</sup>안건량 추이 고려] 어린이·청소년 인권에 관한 안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이상 해당 규정에 의한 재정소요(위원회 위원 수당 등)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시 비용추계 비대상으로 판단됨